

|        |            |
|--------|------------|
| 의안번호   | 2201343    |
| 의 퇴 인  | 정준호의원      |
| 회 답 일  | 2024.10.14 |
| 추 계 번호 | 24B1386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도시철도운영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739억원, 2030년 1조 964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5조 1,828억원(연평균 1조 36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br>(안 제31조의2 신설)           | 9,738 | 10,050 | 10,406 | 10,668 | 10,963 | 51,826 | 10,365 |
|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br>의위원회<br>(안 제31조의3 신설) | 0.3   | 0.3    | 0.3    | 0.3    | 0.3    | 1.7    | 0.3    |
| 합계                                      | 9,739 | 10,050 | 10,407 | 10,669 | 10,964 | 51,828 | 10,366 |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Ⅱ.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2조<br>(정부 지원 등)                 |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항)                                                | 재량규정 |
| 2  | 안 제31조의2 신설<br>(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 국가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지원함(제1항)                                                    | 의무규정 |
|    |                                     |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br>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에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과 환급액<br>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 의무규정 |
| 3  | 안 제31조의3 신설<br>(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감면액 등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                                                                                                 |
|----|-------------------------------------|------|----------------------------------------------------------------------------------------------------|
| 1  | 안 제22조<br>(정부 지원 등)                 | ×    | • (제3호) 정부의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 시 일부 지원하는 소요비용은 각 도시철도 시설별 노후화현황, 지원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2  | 안 제31조의2 신설<br>(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 ○    | • (추계) 최근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 3  | 안 제31조의3 신설<br>(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 ○    | • (추계) 유사사례 위원회 운영에 준하여 추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가가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을 감면하는 공익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안 제31조의2)과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안 제31조의3)

### 가. 안 제31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임감면 대상) 현재 법령 등에 따른 도시철도운임 감면은 다음과 같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어린이 및 유아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sup>1)</sup>
    - (감면액) 전액(무임)

---

1)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 등록장애인, 무임
  - (법적)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sup>2)</sup>
  - (감면액) 전액(무임)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법적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sup>3)</sup>
  - (법적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sup>4)</sup>
  - (법적근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sup>5)</sup>
  - (법적근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sup>6)</sup>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

-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감면액) 전액(무임)
  - 청소년: 9~18세, 할인지원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sup>7)</sup>
    - (감면액) 성인요금 대비 할인([표 7] 참고)
  - 공익서비스 비용지원은 감면액 전액으로 가정함
- (운임감면제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연령대별로 어린이요금, 청소년요금으로 성인요금 대비 할인을 받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전액 무임으로 운송되고 있는 무임운송 대상과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감면운송 대상으로 구분하여 추계값을 제시함
- (자료원) 추계에 활용되는 인구, 도시철도 운송운임,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
-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2026~2030년), 인구총조사(2017~2023년)
  - 실적치는 국토교통부 외(2024) 「2023년 철도통계연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인원, 무임수송 환산운임을 적용함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1) 무임수송비용 지원

□ 현행 법령에 따른 무임운송 대상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으로 최근 대상자별 무임수송 이용건수와 무임수송 환산운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020~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동인원이 감소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시기의 실적치는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병 이전 실적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2023년 수치를 고려하여 추계에 활용함
- ‘기타(다자녀세대 등)’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대전·광주광역시<sup>8)</sup>)가 다자녀세대, 임신부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면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이를 포함함
  - 다만, 본 추계에서는 향후 이들 외 지역의 정책실시 여부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2023년 무임수송 인원 실적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무임수송 대상별 이용건수 및 환산운임 현황: 2015~2021년

(단위: 천건, 백만원)

| 구분        | 대상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무임수송 이용건수 | 65세 이상 | 328,145 | 344,134 | 366,191 | 380,263 | 408,839 | 293,485 | 315,425 | 369,084 | <b>417,292</b> |
|           | 장애인    | 81,309  | 80,524  | 80,856  | 79,858  | 82,438  | 60,620  | 60,464  | 63,952  | 68,697         |
|           | 국가유공자  | 5,591   | 5,494   | 5,422   | 5,391   | 5,501   | 3,919   | 3,854   | 4,106   | 4,560          |
|           | 기타     | 262     | 297     | 317     | 318     | 323     | 347     | 447     | 533     | 1,138          |
|           | 합계     | 415,307 | 430,449 | 452,786 | 465,830 | 497,101 | 358,371 | 380,190 | 437,675 | 491,665        |
| 무임수송 환산운임 | 65세 이상 | 407,307 | 449,501 | 489,949 | 510,596 | 548,415 | 393,494 | 423,207 | 495,454 | <b>578,008</b> |
|           | 장애인    | 100,871 | 105,710 | 108,386 | 107,380 | 110,769 | 81,410  | 81,261  | 85,984  | 95,285         |
|           | 국가유공자  | 6,946   | 7,268   | 7,275   | 7,257   | 7,354   | 5,253   | 5,167   | 5,492   | 6,303          |
|           | 기타     | 335     | 375     | 399     | 399     | 405     | 456     | 591     | 706     | 1,474          |
|           | 합계     | 515,459 | 562,854 | 606,010 | 625,632 | 666,943 | 480,613 | 510,225 | 587,636 | 681,064        |

주: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무임수송 환산운임 결과로 광역철도는 미포함된 결과임

자료: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2023년 철도통계연보」, 2024.

8) 광주광역시에서 2020년 1월 30일부터 다자녀세대, 임신부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면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20~2021년에도 ‘기타’에 해당하는 무임수송 건수도 증가

□ (추계대상: 무임수송) 무임수송인원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활용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비율은 총인구 중 대상자별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함

-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과 국가유공자 비율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전망함
  - 총인구 대비 장애인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적기간 동안 평균 증가추세(0.039%p)를 적용
  - 총인구 대비 국가유공자등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적기간 동안 평균 감소추세(-0.003%p)를 적용

[표 3] 총인구 및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수: 2015~2023년

(단위: 천명)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총인구(A)    |             | 51,529 | 51,696 | 51,779 | 51,826 | 51,850 | 51,829 | 51,738 | 51,692 | 51,775 |
| 인원        | 65세 이상(B)   | 6,617  | 6,827  | 7,171  | 7,455  | 7,817  | 8,287  | 8,707  | 9,146  | 9,609  |
|           | 장애인(C)      | 2,490  | 2,511  | 2,546  | 2,586  | 2,618  | 2,633  | 2,645  | 2,648  | 2,642  |
|           | 국가유공자(D)    | 122    | 121    | 120    | 119    | 118    | 117    | 116    | 113    | 111    |
| 총인구 대비 비율 | 장애인(C/A)    | 4.88%  | 4.90%  | 4.95%  | 5.01%  | 5.06%  | 5.08%  | 5.11%  | 5.12%  | 5.10%  |
|           | 국가유공자등(D/A) | 0.24%  | 0.24%  | 0.23%  | 0.23%  | 0.23%  | 0.23%  | 0.22%  | 0.22%  | 0.22%  |

자료: 1. 총인구: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년도)

2. 장애인 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현황」

3. 국가유공자: e-나라지표,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현황, 「보훈정책자료시스템」

□ (연평균 도시철도 이용건수) 2015~2019년 기간 동안 1인당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노인 50.9회, 장애인 31.8회, 국가유공자 45.7회로 산출

[표 4] 1인당 무임수송 이용횟수: 2015~2019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연평균         |
|--------------------------------|-------|---------|---------|---------|---------|---------|-------------|
| 인구<br>(A, 천명)                  | 노인    | 6,617   | 6,827   | 7,171   | 7,455   | 7,817   | 7,177       |
|                                | 장애인   | 2,490   | 2,511   | 2,546   | 2,586   | 2,618   | 2,550       |
|                                | 국가유공자 | 122     | 121     | 120     | 119     | 118     | 120         |
| 무임수송 건수<br>(B, 천건)             | 노인    | 328,145 | 344,134 | 366,191 | 380,263 | 408,839 | 365,514     |
|                                | 장애인   | 81,309  | 80,524  | 80,856  | 79,858  | 82,438  | 80,997      |
|                                | 국가유공자 | 5,591   | 5,494   | 5,422   | 5,391   | 5,501   | 5,480       |
| 1인당 무임수송<br>횟수<br>(C=B/A, 건/명) | 노인    | 49.6    | 50.4    | 51.1    | 51.0    | 52.3    | <b>50.9</b> |
|                                | 장애인   | 32.7    | 32.1    | 31.8    | 30.9    | 31.5    | <b>31.8</b> |
|                                | 국가유공자 | 45.9    | 45.3    | 45.1    | 45.4    | 46.6    | <b>45.7</b> |

주: 노인수(통계청 인구총조사 65세 이상 인구), 장애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보훈통계(개별법률에서 규정한 무임수송 대상자)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출자료,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2021년 철도통계 연보」, 2022.10를 바탕으로 재정리

□ (운임단가) 1인당 운임단가는 최근 신설된 노선 및 운임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23년 실적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1인당 운임단가는 대상자별 무임환산운임을 무임수송건수로 나누어 추산

[표 5] 무임수송 1건당 운임단가: 2015~2023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무임수송 건당<br>운임단가(원/명) | 65세 이상 | 1,241 | 1,306 | 1,338 | 1,343 | 1,341 | 1,341 | 1,342 | 1,342 | <b>1,385</b> |
|                      | 장애인    | 1,241 | 1,313 | 1,340 | 1,345 | 1,344 | 1,343 | 1,344 | 1,345 | <b>1,387</b> |
|                      | 국가유공자  | 1,242 | 1,323 | 1,342 | 1,346 | 1,337 | 1,340 | 1,341 | 1,338 | <b>1,382</b> |
|                      | 기타     | 1,279 | 1,263 | 1,259 | 1,255 | 1,254 | 1,314 | 1,322 | 1,325 | <b>1,295</b> |

자료: 국토교통부 외(2024) 「2023년 철도통계연보」(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무임수송 추계결과) 추계기간동안 총인구 대비 대상별 인구 및 비율, 1인당 무임수송 횟수, 무임수송 건당 운임단가를 곱하여 무임수송 환산 운임 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

- 다만, 기타(다자녀세대)는 2023년 무임수송 인원 실적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무임수송 비용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노인         | 65세 이상 인구<br>(A, 천명)         | 11,125  | 11,597  | 12,125  | 12,521  | 12,980  |
|            | 1인당 무임수송 이용<br>횟수(B, 회)      | 50.9    | 50.9    | 50.9    | 50.9    | 50.9    |
|            | 무임수송 건수<br>(C=A×B, 천건)       | 565,978 | 589,993 | 616,869 | 637,014 | 660,360 |
|            | 건당 운임단가<br>(D, 원/건)          | 1,385   | 1,385   | 1,385   | 1,385   | 1,385   |
|            | 소계<br>(E=C×D, 백만원)           | 783,959 | 817,224 | 854,451 | 882,354 | 914,692 |
| 총인구(F, 천명) |                              | 51,609  | 51,535  | 51,460  | 51,384  | 51,306  |
| 장애인        | 총 인구대비 등록장애<br>인 수 비율 (G, %) | 5.10    | 5.10    | 5.10    | 5.10    | 5.10    |
|            | 장애인 수 추정<br>(H=F×G, 천명)      | 2,633   | 2,630   | 2,626   | 2,622   | 2,618   |
|            | 1인당 무임수송 이용<br>횟수(I, 회)      | 31.8    | 31.8    | 31.8    | 31.8    | 31.8    |
|            | 무임수송 건수<br>(J=H×I, 천건)       | 83,668  | 83,547  | 83,426  | 83,303  | 83,176  |
|            | 건당 운임단가<br>(K, 원/건)          | 1,387   | 1,387   | 1,387   | 1,387   | 1,387   |
|            | 소계<br>(L=J×K, 백만원)           | 116,050 | 115,882 | 115,714 | 115,544 | 115,367 |
| 국가유공자      | 총 인구대비 국가유공<br>자 수 비율(M, %)  | 0.22    | 0.22    | 0.22    | 0.22    | 0.22    |
|            | 국가유공자 수 추정<br>(N=F×M, 천명)    | 111.1   | 110.9   | 110.8   | 110.6   | 110.5   |
|            | 1인당 무임수송<br>이용횟수(O, 회)       | 45.7    | 45.7    | 45.7    | 45.7    | 45.7    |
|            | 무임수송 건수<br>(P=N×O, 천건)       | 5,073   | 5,066   | 5,058   | 5,051   | 5,043   |
|            | 건당 운임단가<br>(Q, 원/건)          | 1,382   | 1,382   | 1,382   | 1,382   | 1,382   |
|            | 소계<br>(R=P×Q, 백만원)           | 7,012   | 7,002   | 6,992   | 6,981   | 6,971   |

|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기타<br>(다자녀세대 등)            | 무임수송 건수<br>(S, 천건)            | 1,138   | 1,138   | 1,138   | 1,138     | 1,138     |
|                            | 건당 운임단가<br>(T, 원/건)           | 1,295   | 1,295   | 1,295   | 1,295     | 1,295     |
|                            | 소계<br>( $U=S \times T$ , 백만원) | 1,474   | 1,474   | 1,474   | 1,474     | 1,474     |
| 합계<br>( $V=E+L+R+U$ , 백만원) |                               | 908,495 | 941,581 | 978,630 | 1,006,353 | 1,038,504 |

주: 1. 추계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임과 이용횟수 등은 현행 실적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도시철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변화로 인한 수요증가분은 추계에서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추계값은 동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기타(다자녀세대 등)는 대전광역시의 다자녀 운임감면 정책(2009년 시행), 광주광역시의 다자녀 및 임신부 운임감면 정책('20.1.30. 시행) 등에 따른 무상운임으로, 추계기간 동안 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 감면수송비용 지원

□ 도시철도공사는 연령별로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요금을 성인대비 할인하여 운영중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감면대상은 청소년(만 9세부터 18세까지)

[표 7] 도시철도 운임제도 현황

| 사업자                                                                        | 요금부과방식 | 성인                                                                            | 청소년<br>(13~18세) | 어린이<br>(6~12세) |
|----------------------------------------------------------------------------|--------|-------------------------------------------------------------------------------|-----------------|----------------|
| 서울교통공사<br>(1~8호선)<br>서울시메트로9호선(주)<br>(1단계)<br>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부<br>문<br>(2~3단계) | 거리비례제  | 기본운임 1,250원<br>(10km이내)<br>추가운임: 100원<br>(10~50km 마다)<br>(50km 초과,<br>매8km마다) | 800원            | 500원           |
| 우이신설경전철(주)                                                                 | 거리비례제  | 서울과 동일                                                                        |                 |                |
| 김포골드라인(주)                                                                  | 거리비례제  | 서울과 동일                                                                        |                 |                |
| 인천교통공사                                                                     | 거리비례제  | 서울과 동일                                                                        |                 |                |

| 사업자             | 요금부과방식 | 성인                         | 청소년<br>(13~18세)            | 어린이<br>(6~12세)         |
|-----------------|--------|----------------------------|----------------------------|------------------------|
| 의정부경량전철(주)      | 거리비례제  | 서울과 동일<br>별도운임(300원)       | 1,080원                     | 750원                   |
| 용인경량전철(주)       | 거리비례제  | 서울과 동일<br>별도운임(200원)       | 880원                       | 550원                   |
| 부산교통공사          | 균일제    | 1구간: 1,300원<br>2구간: 1,500원 | 1구간: 1,050원<br>2구간: 1,200원 | 무료                     |
| 대구도시철도공사        | 균일제    | 1,250원                     | 850원                       | 400원                   |
| 광주광역시<br>도시철도공사 | 균일제    | 1,250원                     | 900원                       | 500원                   |
| 대전교통공사          | 균일제    | 1구간: 1,250원<br>2구간: 1,350원 | 960원                       | 1구간: 550원<br>2구간: 600원 |
| 부산-김해경전철(주)     | 균일제    | 1구간: 1,350원<br>2구간: 1,500원 | 1구간: 1,000원<br>2구간: 1,150원 | 1구간: 650원<br>2구간: 750원 |

자료: 국토교통부 외(2024), 철도통계연보

□ 본 추계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감면대상 연령이 9~18세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감면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총 7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의 도시철도 이용인원과 환산운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기간인 2020~2021년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약 40% 대로 감소하는 등 이동제한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며, 2022년부터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다시 이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평균 도시철도 이용건수) 2015~2019년 기간 동안 1인당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어린이 8.5회, 청소년 34.9회로 산출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기간인 2020~2021년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건수는 약 40% 대로 감소하는 등 이동제한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며, 2022년부터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다시 이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 1인당 감면수송 이용횟수: 2018~2023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18~19   |
|--------------------------------|-----|---------|--------|--------|--------|--------|--------|---------|
| 인구<br>(A, 천명)                  | 어린이 | 3,207   | 3,213  | 3,181  | 3,158  | 3,130  | 3,031  | 3,210   |
|                                | 청소년 | 3,048   | 2,861  | 2,782  | 2,751  | 2,716  | 2,703  | 2,954   |
| 감면수송 건수<br>(B, 천건)             | 어린이 | 26,851  | 27,647 | 10,799 | 11,834 | 17,282 | 19,405 | 27,249  |
|                                | 청소년 | 111,537 | 94,799 | 48,315 | 55,952 | 68,762 | 79,926 | 103,168 |
| 1인당 감면수송<br>횟수<br>(C=B/A, 건/명) | 어린이 | 8.4     | 8.6    | 3.4    | 3.7    | 5.5    | 6.4    | 8.5     |
|                                | 청소년 | 36.6    | 33.1   | 17.4   | 20.3   | 25.3   | 29.6   | 34.9    |

주: 서울시 실적치에는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신림선 구간 실적이 반영, 인천시 실적치에는 2022년 부터 운영을 시작한 7호선(까치울역~상동역)구간 실적이 반영

자료: 도시철도 실적자료는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서울시 남서울 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주)), 부산시(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 대구시(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시(인천교통공사), 광주시(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시(대전교통공사), 경기도(의정부경량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의 제출결과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감염병에 따른 이동제한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고, 2023년 실적치에서도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에는 감염병 이전 수준으로 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8~2019년간 도시철도 이동실적에 기반하여 관련 비용을 추산함

□ 광역시도별 도시철도 이용 인원 및 이용운임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 연령별 1인당 평균 이용횟수, 1인당 평균 운임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추계대상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무상지원 시 소요비용으로, 현행 도시철도 운임은 어린이(초등학생, 6~12세), 청소년(중학생 및 고등학생, 13~18세)에 대하여 감면(일부 지자체 무료<sup>9)</sup>)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함
  - 현행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도시철도 이용운임은 1세 단위의 이용운임정보가 부재하므로, 아래 연령군에 속하는 연령단위의 경우 해당 구간의 1인당 평균이용운임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계함
- 광역시도별 1인당 연평균 이용횟수는 연령별 인구 대비 도시철도 이용횟

9) 부산교통공사는 2023년 10월부터 어린이 운임을 무료화하였음

수를 나누어 산출하며, 이동이 제한되었던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  
 년은 실적치에서 제외함

–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실적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지역(인천시  
 (어린이, 성인), 경기도)의 경우 2023년 실적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감면운임 지원단가) 청소년에 대한 감면운임 지원은 성인요금 대비 청  
 소년이 지불하는 요금의 차액을 지원금액으로 가정하며, 평균 차액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도시철도 이용건당 이용요금은 그 밖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요금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음
- 광역 시도별 1인당 운임단가는 최근 신설된 노선과 운임인상 등을 고려하  
 여 2023년 수치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9】 도시철도 이용건당 이용요금: 2018~2023년

(단위: 원)

| 일반인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평균         |
|------------------|-------|-------|-------|-------|-------|------------|------------|
| 어린이(6~12세, a)    | 515   | 510   | 524   | 510   | 516   | 483        | —          |
| 청소년(13~18세, b)   | 787   | 809   | 812   | 815   | 833   | 802        | —          |
| 성인(19~64세, c)    | 1,232 | 1,246 | 1,251 | 1,252 | 1,248 | 1,291      | —          |
| 감면운임 지원단가        |       |       |       |       |       |            |            |
| 어린이(6~12세, c-a)  | 717   | 736   | 727   | 742   | 732   | <b>808</b> | <b>808</b> |
| 청소년(13~18세, c-b) | 445   | 437   | 439   | 437   | 415   | <b>489</b> | <b>489</b> |

자료: 국토교통부 외(2024) 「2023년 철도통계연보」(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감면수송 추계결과)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어린이(6~12세), 청소년(9~18세)의 감면운임 지원 시 소요비용은 대상별 인구 및 비율, 1인당 도시철도 이용건수, 1인당 감면요금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정함<sup>10)</sup>

[표 10] 감면대상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대상<br>인구              | 어린이<br>(6~12세, 천명, a) | 2,634  | 2,475  | 2,292  | 2,108  | 1,952  | 11,461  | 2,292  |
|                       | 청소년(13~18세,<br>천명, b) | 2,773  | 2,723  | 2,714  | 2,700  | 2,607  | 13,516  | 2,703  |
| 감면<br>운임<br>지원<br>단가  | 어린이<br>(6~12세, 원, c)  | 808    | 808    | 808    | 808    | 808    | —       | 808    |
|                       | 청소년<br>(13~18세, 원, d) | 489    | 489    | 489    | 489    | 489    | —       | 489    |
| 도시<br>철도<br>이용<br>건수  | 어린이<br>(6~12세, 건, e)  | 8.5    | 8.5    | 8.5    | 8.5    | 8.5    | —       | 8.5    |
|                       | 청소년<br>(13~18세, 건, f) | 34.9   | 34.9   | 34.9   | 34.9   | 34.9   | —       | 34.9   |
| 합계<br>(a×c×e + b×d×f) |                       | 65,348 | 63,395 | 61,994 | 60,489 | 57,830 | 309,056 | 61,811 |

주: 부산시, 경기도 등은 어린이, 청소년 도시철도 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지방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시 이러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조정 여부 등의 상황이 불확정적이므로 현행 지방비 사업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았음

10) 경기도(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연간 24만원 한도)와 부산광역시(어린이 도시철도 요금 무료: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2024.3)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액 지방비로 소요되고 있음. 본 추계에서는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하므로, 국가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현행 무상사업의 국비지원 규모 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는 불확정적이므로 지방비가 지원중인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 규모를 추산함

###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 대상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다자녀세대 등), 청소년 등의 도시철도 수송에 따른 운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5조 1,826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65세이상           | 783,959 | 817,224   | 854,451   | 882,354   | 914,692   | 4,252,680 | 850,536   |
| 장애인             | 116,050 | 115,882   | 115,714   | 115,544   | 115,367   | 578,556   | 115,711   |
| 국가유공자           | 7,012   | 7,002     | 6,992     | 6,981     | 6,971     | 34,958    | 6,992     |
| 기타<br>(다자녀세대 등) | 1,474   | 1,474     | 1,474     | 1,474     | 1,474     | 7,370     | 1,474     |
| 어린이 및<br>청소년    | 65,348  | 63,395    | 61,994    | 60,489    | 57,830    | 309,056   | 61,811    |
| 합계              | 973,843 | 1,004,977 | 1,040,625 | 1,066,842 | 1,096,334 | 5,182,620 | 1,036,524 |

- 주: 1. 추계기간 동안 도시철도 운임과 이용횟수 등은 현행 실적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도시철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변화로 인한 수요증가분은 추계에서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추계값은 동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3. 기타(다자녀세대 등)는 대전광역시의 다자녀 운임감면 정책(2009년 시행), 광주광역시의 다자녀 및 임신부 운임감면 정책('20.1.30. 시행) 등에 따른 무상운임으로, 추계기간 동안 이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4. 부산시, 경기도 등은 어린이, 청소년 도시철도 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지방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시 이러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조정 여부 등의 상황이 불확정적이므로 현행 지방비 사업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았음

나. 안 제31조의3(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 (추계대상) 개정안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운영비용을 추산함
- (유사사례 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참고함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검토 및 심의
    - 위원수: 20인(공무원 6인, 민간위원 14명)
    - 개회일수: 연평균 8회

[표 1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현황: 2021~2023년

(단위: 회)

| 구분  | 2021 | 2022 | 2023 | 합계 | 평균 |
|-----|------|------|------|----|----|
| 본회의 | 8    | 8    | 8    | 24 | 8  |

자료: 국토교통부 위원회 활동내역서(2024.3. 기준)

-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위원수: 20인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 20인 중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은 14인으로 가정함
  - 개회일수: 연 8회로 가정
    - 개회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평균 개회일 수인 8회로 가정
  - 회의참석수당 단가: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
    -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sup>11)</sup>,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

11) 기획재정부(2023)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1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민간위원수(A, 명)    | 14   | 14   | 14   | 14   | 14   | -   | -    |
| 회의참석수당(B, 백만원) | 0.3  | 0.3  | 0.3  | 0.3  | 0.3  | -   | -    |
| 개회일수(C, 일)     | 8    | 8    | 8    | 8    | 8    | -   | -    |
| 합계(A×B×C, 백만원) | 33.6 | 33.6 | 33.6 | 33.6 | 33.6 | 168 | 33.6 |

####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도시철도운영자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739억원, 2030년 1조 964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5조 1,828억원(연평균 1조 36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br>(안 제31조의2 신설)           | 9,738 | 10,050 | 10,406 | 10,668 | 10,963 | 51,826 | 10,365 |
| 공익서비스비용 산정·평가심<br>의위원회<br>(안 제31조의3 신설) | 0.3   | 0.3    | 0.3    | 0.3    | 0.3    | 1.7    | 0.3    |
| 합계                                      | 9,739 | 10,050 | 10,407 | 10,669 | 10,964 | 51,828 | 10,366 |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IV. 부대의견

- 본 보고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받는 대상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최근 실적치를 기반으로 추계한 결과로, 추계기간 동안의 요금 인상, 정부 지원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은 추계에 고려하지 않았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문지은 | 배아형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문지은 | 02-6788-4645 | mtsophia@assembly.go.kr |